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67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이광희 · 정춘생 · 김문수
박정현 · 김우영 · 임미애
민병덕 · 허종식 · 김태년
채현일 · 윤종오 · 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영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이동 및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전 검사) ① 건설공사용 승강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설치하여 사용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공사용 승강기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